

대구지방법원 2016. 12. 8 선고 2015가합20488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변론 종결2016. 11. 8.

판결 선고2016. 12. 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96,533,325원 및 위 금원 중 129,642,630원에 대하여는 2015. 6. 9.부터, 166,750,858원에 대하여는 2015. 6. 30.부터 각 2015. 7. 28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B, C, D,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A은 원고에게 296,533,325원 및 위 금원 중 129,642,630원에 대하여는 2015. 6. 9.부터, 166,750,858원에 대하여는 2015. 6. 30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피고 A과 피고 B, C, D,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4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,494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, C, D, E은 원고에게 각 67,623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(이하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관한 약정을 '제1약정', 채권자 F 주식회사에 관한 약정을 '제2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,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.

1	주식회사 대구은행	일반자금대출(운전)	170,000,000원	2014. 6. 18.	2014. 6. 18. ~ 2015. 6. 17.
2	F 주식회사	대리점계약	130,000,000원	2014. 9. 24.	2014. 9. 24. ~ 2015. 9. 23.

나.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200,000,000원,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130,000,000원을 각 대출받았다.

다. 그 후 피고 A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원고가 2015. 6. 9. F 주식회사에 130,000,000원, 2015. 6. 30.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66,750,858원을 각

대위변제하였다.

라.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. 12. 1.부터 현재까지 연 12%이고, 제1약정과 관련하여 미수 위약금 139,720원이 발생하였으며, 제2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357,37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하여 11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.

마. 한편, 피고 A은 2015. 4. 29. 피고 B, C, D,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고,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. 5. 6. 접수 제1054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. 4. 29.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는 2,752,494,000원인데, 위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. 9. 10. 접수 제50719호, 같은 등기국 2012. 9. 26. 접수 제 53936호, 같은 등기국 2013. 10. 22. 접수 제13883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, 채무자 A, 채권최고액 합계 2,600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국 2015. 3. 3. 접수 제46384호로 근저당권자 소외 G, 채무자 A, 채권최고액 64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, 위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2,430,000,000원이었으며, 이외에도 위 부동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들이 존재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52,000,000원이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 내지 제8호증,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, 감정인 H의 감정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미수 위약금, 확정손해금의 합계인 296,533,325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, C, D,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수익자인 피고 B, C, D, E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,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, 채무자 B, 채권최고액 3,000,000,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위 부동산의 가액 2,752,494,000원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 2,430,000,000원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52,000,000원을 공제한 270,494,000원(2,752,494,000원 - 2,430,000,000원 - 52,000,000원)이며, 한편 G은 피고 A의 동생에 해당하여 G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.

라.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270,494,000원이므로, 피고 B, C, D, E은 원고에게 각 67,623,500원(270,494,000원 × 1/4)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가 피고 A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. 6. 9. F 주식회사에 130,000,000원을, 2015. 6. 30.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66,750,8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%인 사실, 제1약정과 관련하여 미수 위약금 139,720원, 제2약정과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117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제2약정과 관련하여 357,37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피고 A은 원고에게 296,533,325원(130,000,000원 + 166,750,858원 + 139,720원 + 117원 - 357,370원) 및 위 금원 중 129,642,630원(130,000,000원 - 357,370원)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. 6. 9.부터, 166,750,85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. 6. 30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. 7. 28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

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이하 '특례규정'이라고 한다) 부칙 제2조 제2항, 구 특례규정(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5. 10. 1. 이후에는 연 15%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).

4.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법리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는 2,752,494,000원인데,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,600,000,000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각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40,000,000원의 G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, 위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2,430,000,000원이며, 이외에도 위 부동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들이 존재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52,000,000원인 점,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이 피고 A의 동생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 그 보증금인 22,000,000원을 피고 A이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, ③ 오히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A은

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위 증인에게 G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40,000,000원이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00,000,000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, 달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없다거나 위 금액보다 작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G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00,000,000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대구은행, G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은 2,782,000,000원(2,430,000,000원 + 300,000,000원 + 52,000,000원)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인 2,752,494,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B, C, D,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서경희

판사박상한

판사한승진

별지